

협력사 행동규범

본 협력사 행동 규범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넥센타이어 경영이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력사가 본 방침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 및 경제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넥센타이어는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지하거나, 관련된 책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본 협력사 행동 규범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1-1. 윤리강령 준수

-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윤리강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1-2.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 1) 협력사는 일반적인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이해 가능한 상도덕과 거래 관습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거래 전 수출규제와 경제제재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3. 정보공개

- 1) 협력사의 거래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절차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자 소재지의 회계 기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 기록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사전 동의 하에 각 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ESG 점검을 시행합니다.

1-4.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 1) 협력사는 협력사 또는 협력사 내외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 2) 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내부고발 절차는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부당 이익 금지

- 1)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
- 2)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넥센타이어의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이나 항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요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넥센타이어 윤리 경영실로 제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권 존중 및 보호

2-1. 인도적 대우

- 1)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에 대한 가혹/비인도적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비인도적 대우: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 2)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 시 사업장이 속한 노동 법규에 따라하며, 사업장이 소속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2. 차별금지

- 1)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대우해야 합니다.
- 2) 고용 관행(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교육훈련등)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장애인, 여성기업인, 인종 등)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따라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2-3. 아동 노동 금지

- 1) 협력사는 15세 미만의 아동 또는 해당 법정 최소 고용 연령에 미만한 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2-4. 근로시간 준수

- 1) 협력사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사업장 노동법규 이상의 근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5. 임금과 복리후생

- 1)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와 급여/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초과 근로시 사업장이 속한 노동 법규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6. 결사의 자유

- 1) 협력사는 근로자가 사업자 소재 지역의 노동 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협약 및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7. 사설 및 공공 보안업체

- 1) 협력사는 사설 및 공공 보안업체 고용 시 관련 업체와 근무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3-1. 산업안전

- 1)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 지역 혹은 국가의 보건/안전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정책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지역 언어로 산업 안전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3) 임신부와 수유부는 위해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3-2. 시설물 안전관리

- 1) 협력사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꾸준히 시설물과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3-3. 산업 위생

- 1) 정기적으로 사업장 환경(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측정하여 영향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 2)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조치 및 통제를 통해 위험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안전·보건교육

- 1)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취급 정보를 교육, 훈련시켜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유해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공급시 사업장 소재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취급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제품 정보, 안전보건자료, 사용 및 노출 시나리오 등)를 당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제품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품 외관에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시 라벨로 부착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3-5. 비상대응

- 1) 협력사의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 필요한 경우,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 2)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4.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4-1. 환경 법규 준수

- 1) 협력사는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정책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4-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 1) 협력사는 천연자원(물, 원자재 등)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 공정/기술의 개발과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자원보존, 재활용/재생 에너지사용 등으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3.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관리

- 1) 협력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자 내의 각종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송음, 폐수 및 폐기물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해 물질 배출에 주의를 기울여 배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4-4. 수자원 관리

- 1)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과 방출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자체적으로 폐수 절차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 운영상 발생한 폐수는 절차 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추어 방출 되어야 합니다.

4-5. 토지 이용 및 산림 벌채

- 1) 협력사는 사업 전반에 걸쳐 산림 벌채를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산림 벌채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4-6. 생물다양성 및 동물 복지

- 1) 협력사는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영향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시 소재지 내의 법령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5-1. 지적 재산 보호

- 1) 협력사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5-2. 부품 위조 방지

- 1) 협력사는 당사에 공급되는 완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분쟁광물

넥센타이어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넥센타이어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의 10개 지역을 지칭합니다. 규제 대상 광물(분쟁광물)은 상기 10개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지칭합니다.

7. 협력사 ESG 방침 관련 요구 사항

- 1) 협력사는 본 ESG 방침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특정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넥센타이어의 윤리경영실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3) 넥센타이어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협력사와 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② 신규 거래 시 모든 회사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③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어떠한 형태의 부당 행위도 금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협력사가 당사를 위한 제품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등의 업무 수행 시 기술적 협조 제공 등 상호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거래 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체결을 통해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양사간 임직원에게 전파하며, 내용을 준수하는 데 선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서명	넥센타이어 협력사 행동규범	버전	2.0
제정일자	2020.08.07	개정일자	2023.06.26
제·개정부서	구매팀	관리부서	ESG팀